

소액수의 물품계약(단가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신도시, 웅상정수장 분말활성탄 구입(단가계약)
구매수량	분말활성탄(수처리용, 건조감량 5-20%이하) 12,000kg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납품장소	신도시정수장(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106) 웅상정수장(경상남도 양산시 덕계서로 75)
총예산액	금42,000,000원(금사천이백만원)
기초금액	금3,500원/kg (운송료·계근비·인건비 및 부가가치세 등 포함) ※ 본 입찰은 반드시 1kg에 대한 기초단가를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함 ※ 계약금액은 '낙찰단가(원단위 이하 절사)×수량'으로 계산한 총 금액으로 정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7. 23. (목) 17:00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7. 29. (수) 10:00
개찰일시·개찰장소	2026. 7. 29. (수) 11:00, 입찰집행관 PC
재입찰 집행	2026. 7. 29. (수) 16:00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 허용 입찰로 투찰 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 공고, 공고 취소 시 별도로 통보 없음)

- * 참가 전 반드시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고, 과업의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사업담당자(☎ 055-392-5614)에게 확인 후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불이행 시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수의견적

3. 입찰 참가 자격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경남 **양산시**에 두고 있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일까지 **G2B세부품명번호 활성화탄(10자리, 11101522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시방서 등에 제시한 규격으로 해당 물품의 납품이 가능한 업체

다. 「먹는물 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수처리제 제조업(활성탄) 등록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구매대상 물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되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에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1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공동계약 불가, 하도급 불허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pm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라. 계약은 낙찰통지(나라장터의 낙찰자 결정으로 같음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음)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입찰(견적서제출)무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청렴계약이행서: 양산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시정정보 - 계약정보 - 계약관련서식)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 가. 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견적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서식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 체결 불가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가. 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서식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참고사항

- 가. 본 건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 물품이며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견적제출참가자는 g2b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회계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 g2b시스템 이용약관, g2b조달업체안내서, g2b시스템상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및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발주부서 설계내역서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마. 계약상대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완료대금 청구 시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0.7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당해 견적제출 건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 또는 참가예정자는 이의 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사.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055-392-3213) 및 홈페이지(www.yangsan.go.kr → 종합 민원 → 신고센터 →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

13. 기타문의

- 가. 물품규격서 및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 정수과 사업담당자(☎055-392-5614)
- 나.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수도과 계약담당자(☎055-392-5402)
-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라. 입찰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23.

양산시 수도사업 기업출납원

수의계약 배제사유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서식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양산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용역 [] 물품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개인 [] 법인 [] 단체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양산시상하수도사업소
수도사업 기업 출납원 귀중

계약상대자
(확인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양산시 발주 물품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양산시 발주 물품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계획서와 함께 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발견 시 보수·보강,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양산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양산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